DRG에서 동일절개하에 다른 수술시 산정방법

제왕절개시 난소수술 자궁적출술시 난소수술 ☎ D279_00 난소의 양성신생물, 상세불명 쪽 ♬ R4421001 부속기종양적출술 양성 제2의 수술

19. 질병군 진료시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되

수술 이외에 제1편 제2부제9장제1절(기본처치 제외) 또 는 제10장제3절제4절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. 다만, 주된 수술과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실시되는 수술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

70%를 산정 한다. 질병군 부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26호(2015년 1월 30일)

자궁적출술시 TOT등

(행위별 수가로개별 청구, 50%가능함.)

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제1편제2부제9장제1절(기본처치 제외) 및 제10장제3절, 제4절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의 추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다음 -
- 1. 질병군 진료 중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과 날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수술도 포함함 2. 해당 수술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, 야간공휴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
- 3. 아래의 경우는 추가 산정하지 아니함
 - a)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
 b) 수정체수술 질병군과 동시에 실시한 유리체흡인술(자505), 유리체내주입술(자507), 유리체절제술-부분절제 (자512-나)
 - a) 펴드전제수가 도시에 실시하 아테노이드전제수(내시겨하에서 실시하 겨우 포하)
 - c) 편도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한 아데노이드절제술(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포함)
- d) 기타 또는 주요 항문수술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2개 이상 실시한 경우 4. 위 1부터 3까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제1편

제2부 제9장, 제10장 및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. [. 행위 제9장, 제10장을 적용한다.